

도시관리계획(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16호(2004.4.20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8호(2011.6.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55호(2021.6.3.)로 결정(변경)된, 「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」내 부암동 370-12번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 하는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0월 2일

종로구청장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3	주차장	부암동 370-12	598	감)598	-	서울시고시 제2009-168 호 (’09.04.23)	-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	주차장	· 주차장 폐지 · 위치 : 부암동 370-12 · 면적 : 598㎡	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제입안 신청된 사항으로, ·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및 지역간 확충된 주차시설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, 주차장 설치 실효성이 저조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변경(폐지)하고자 함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

위 치	면적	구분	
		기정	변경
부암동 370-12 일대	598㎡	도시계획시설(주차장)	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민간지침 '제11조'에 따른

■ 변경사유서

위 치	변경사유
부암동 370-12 일대	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해제 후 대상지 일대의 체계적·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민간지침 '제11조'에 따라 대상지를 관리함

라. 관련 도서 : 생략(종로구청 건축과 및 주차관리과 비치 도서와 같음)

마. 기타 사항

-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(02-2148-2813) 및 주차관리과(02-2148-334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도

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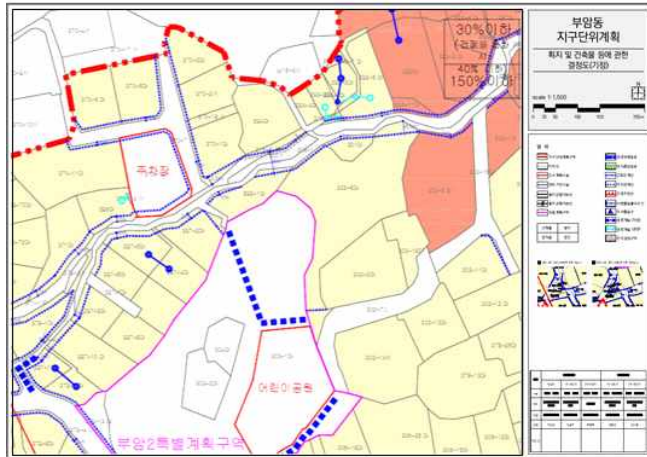


변경(안)



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도 (교통처리계획)

기정



변경(안)

